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견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21.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4. 4. 21.
- 다. 상 정 일 자 : 2004. 6. 21.(제11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반려동의안 의결)
2004. 10. 27.(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2004. 10. 29.(제12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2004. 12. 17.(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위원선임 의결)

2. 의안요지

- 제3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4. 7. 9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8인의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그간의 추진경과

- 2004. 7. 9일부터 다대포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04. 4. 21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대포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선정 의뢰 공문(사하환경청소과-6640)을 접수한 바 있으며
- 지난 5. 6 다대1동장에게 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사하구의사 13060-83)토록 공문지시 함에 따라
- 지난 5. 29 다대1동장으로부터 추천자 11명에 대한 명단이 보고되었습니다.
- 지난 5. 31 김상근씨로부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출 문제점 보안건이 인터넷 상으로 접수 되었으며

- 6. 15 위 주민지원협의체 총무 정성옥씨로부터 위원선출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우리구 의회에 항의 방문한바 있고
- 또한 6. 18 주민지원협의체위원 김상근씨의 진정서 접수에 이어 김주석 다대1동 자치위원장등 주민대표 12명이 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문제와 관련 청장실을 방문한바 있으나 면담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정서 및 항의방문과 청장 면담코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 ① 다대소각장 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후보추천 철회
 - ② 추천 및 선출에 관한사항은 주민대표에게 자율권 부여
 - ③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위원선출
 - ④ 김상섭의원을 주민지원협의체 당연직에서 제외하고 인근 구의원 추천
 - ⑤ 주민자치위원회 안전 부의 등 적법절차를 결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위원 추천 건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의회에 발송된 공문 반려 요망 등입니다.
- 6. 21 제119회 임시회 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사항 반려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 6. 22 위 반려 동의안이 제119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었으며
- 6. 23 후보자 추천관련 일건서류가 다대1동장에 반려 되었습니다.
- 9. 14 다대1동장으로부터 추천자 12명에대한 명단이 2차로 접수되었으며
- 9. 16 다대1동장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철회 요청이 있어 추천관련 일건서류 다대1동장에게 반려 하였습니다.
- 10. 8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자 8명에 대한 명단이 접수되었습니다.
- 10. 25 다대1동 주민 김만정씨 등 5명은 후보추천자 8명 중 부적합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일부 문제인사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의장에게 건의하였습니다.

□ 법률 검토보고

○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구성 등에 관하여는

- 소각장 1일처리 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금번 우리구 의회에서 선정할 지원협의회위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명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구의회 의원 1명이 되겠습니다.
- 지원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 유고가 발생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 지원협의회 위원의 구성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환경상의 영향의 정도·주민의 수 등 지역여건과 소각장에서 가까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성이 강하고 대표성이 있는 자 등 사회적 역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협의회 위원으로써의 자격이 상실 됩니다.
 -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등입니다.

○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고 의결 정족수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의 구성 및 직무, 임원의 선출, 회의개최시기, 안전제출 및 처리결과 처리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자율 운영토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8인의 후보자 전원을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임
- 선임된 주민대표위원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1				
2				
3				
4				
5				
6				
7				
8				